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275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이경택

변 론 종 결 2021. 7. 2.

판 결 선 고 2021. 9. 10.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단11957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18. 접수 제221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47,954,6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7,954,6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기관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07. 10. 24.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1억 5800만 원을 이자 연 10.3%,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08. 10.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한다).

2) D은 2011. 9.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9. 20. 소외 회사와 C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0. 2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9. C에게, 2012. 1. 23. 소외 회사에 각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4) F은 2015. 11. 27.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2. 28. C에게, 2016. 3. 21. 소외 회사에 각 잔존채무가 2015. 10. 31. 기준 연체이자 47,954,638원(연체금리 연 24%)이라는 내용과 함께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5) 원고는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8132호로 소외 회사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47,954,63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2. “소외 회사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54,638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C는 2016. 7. 26.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C에 대하여 2016. 8. 10. 확정되었다.
- 그러나 위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송달되지 아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9210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위 법원이 2017. 3. 21. “소외 회사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54,63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7. 5. 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기재현황과 C의 처분행위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C의 처이다),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2015. 2. 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11. 접수 제1354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2015. 6. 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같은 등기국 2015. 6. 5. 접수 제63047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 2) C는 2016.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2016. 5. 13.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국 2016. 7. 18. 접수 제2213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H(C의 친형으로 보인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H, 2016. 7. 1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같은 등기국 2016. 7. 18. 접수 제22139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 피고에게 2016. 7. 1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같은 등기국 2016. 7. 18. 접수 제2213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47,954,638원의 채무 등 다수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1.경 시가는 2억 9600만 원이다. 2. 주 장

가. 원고

1)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47,954,638원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일반채권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2. 4.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2. 12. 10. 배당종결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7. 7.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C가 2016. 7. 15.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C는 사해행위 이후인 2016. 7. 18.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는바, 피고의 원물반환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방법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액인 47,954,638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동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대여일(2007. 10. 24.) 또는 여신기간 만료일(2008. 10.

24.)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4. 11. 제기되었고, 주채무자의 시효연장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의인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C와 H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H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의 원물반환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방법은 가액배상이 아니라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양도받은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소멸시효 완성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익이 있어 그 이익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익이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 또는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연대보증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위 대여금채권의 여신기간 만료일(2008. 10. 24.)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4. 11. 제기된 사실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2) 그러나 갑 제10~1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D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C 소유이던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호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이하 ‘소외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0. 19.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212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10.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1. 9. 29.자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한 사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4. 2.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부동산은 2012. 10. 4. 매각되어 같은 달 25. 대금이 납입된 사실, ㉢ 위 경매법원은 같은 해 12. 10. 배당기일에 신청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순위로 164,931,66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연대보증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7. 7. 소외 회사와 C를 상대로 위 채권의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에 대하여는 그 지급명령이 2016. 8. 10. 그대로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이행된 소송에서 2017. 3. 2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7.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고, 2012. 12. 10. 이후 다시 진행된 소멸시효 역시 2016. 7. 7.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중단되었으며, 위 대여금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7. 5. 3.부터, 위 연대보증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6. 8. 10.부터 각 10년의 소멸시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4. 11. 무렵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여지는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1.경 시가는 2억 9600만 원인 사실, G이 근저당권자인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2억 1600만 원(= 1억 8000만 + 3600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통상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정도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억 96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추단되며, C는 위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등 다수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방법

1) 관련 법리

가) 어떤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나)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등 참조).

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등 참조).

라)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는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사해행위 당시의 공동담보가액에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고, 수익자가 그 이후에 선의의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공동담보가액을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목적물의 원물반환을 명하게 되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내지 피담보채무액 만큼 감소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마) 그러나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익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3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것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로서는 설령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해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최고액 등을 공동담보가액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그에 따른 수익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사해행위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그 전에 채무자가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수익자가 그 채권최고액 등에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체적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방법은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6. 7. 15. 이 사건 부동산에는 G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600만 원의 선행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제221395호)가 2016. 7. 18. 비로소 마쳐짐으로써 사해행위 이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제221396호)를 마쳤다.

나) 그런데 H은 2016. 7. 15. M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각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갖춘 거래이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거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C에 대한 일반채권자들로서는 설령 이 사건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여야 하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공동담보가액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 이후부터 그에 따른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사해행위 이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고, 수익자인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사해행위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그 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가 그 채권최고액 등에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C의 일반채권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은 그 부동산 시가에서 위 G와 H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등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면 그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것이며, 피고가 이를 이행함에 있어 특별한 법률상 장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가액배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이지현, 판사 이일염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아파트 P동

[도로명주소]

인천 연수구 Q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709.020㎡

2 내지 15층 각 679.860㎡

지층 648.630㎡(대피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연수구 N 대 72529.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R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01.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2529.5분의 98.495 끝.

